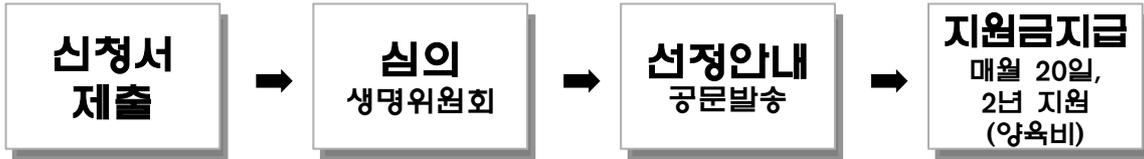


## 생명지원사업 신청안내

### 1. 지원절차 및 수령안내



- ※ 출산지원금, 치료비지원금은 1회 지급
- ※ 본당(또는 관련기관)을 통한 지원신청과 본당(또는 관련기관)을 통한 지원금 전달 원칙
- ※ 중복지원 불가(현재 생명위원회의 생명지원사업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불가 : 단, 2018년 5월부터 만료되는 가정은 가능)  
또한 복수 부문의 중복신청도 불가함(예. 출산지원금과 양육비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없음)

### 2. 지원사업 구비서류 안내

< 공통서류 >

- 1) 지원신청서
- 2) 생명지원금이 입금 될 본당(또는 시설) 명의 통장사본
- 3) (수급자인 경우) 수급자 증명서

#### 가. 출산지원금 구비서류 (1회 지급 / 1가정 당 최대 50만원)

: 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, 세자녀 이상의 임산부, 미혼모 또는 미혼모사회복지시설

- (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(2) 임산부 수첩 또는 보건소, 의료기관 확인서

☞ 임신 증명서류 / 출산예정일 기재 부분 복사 첨부

#### 나. 양육비지원금 구비서류 (2년 매월지급 / 1가정 당 10만원)

##### ◎ 한부모가정

: 세대주 부(또는 모)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이하의 자녀세대(배우자의 사별, 이혼)

- (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(2) 한부모가족증명서(주민센터 및 지자체장 발급가능)

##### ◎ 실직자가정

: 18세 이하 자녀세대 중 가장의 실직

- (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(2) 실직 및 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
  - 실직 이전 자영업자 :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(세무서 발행)
  -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: 퇴직증명원(전 회사 발행가능, 서류 내 실직사유와 근로기간이 나타나야 함)
  - 일일근로자, 노점상, 영세사업자 : 고용확인서(고용주 발행)

◎ **다자녀가정**

: 현재 세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의 가정(현재 셋째아이 임신부 포함)

- (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- ※ 셋째아이 임신부는 임신부 수첩(사본/출산예정일 기재되어있는 부분) 또는 보건소,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요망)

◎ **조손가정**

: 부모의 이혼, 가출 등의 사유로 할아버지, 할머니가 18세 이하의 손자 손녀 양육

- (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◎ **미혼부모가정**

: 미혼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)

: 미혼모사회복지시설(새싹들의 집, 생명의 집) 퇴소시 시설과 연계추천을 받은 가정

※ 대상자 선정 및 심사 → 시설 지원금 송금 및 대상자 전달

- (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(2) 자녀 출생증명서

◎ **입양가정**

: 18세 이하의 영유아·청소년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

※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 제외

- (1) 양부모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(2) 입양관계증명서

**다. 희귀난치병지원금 구비서류 (1회 지급 / 개인별 차등지급)**

: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, 성인

- (1) 진단서 및 소견서
- (2) 진료비 영수증(진단 후 또는 장기치료 환우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)

**3. 신청마감 : 2018년 4월 27일(금)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**

※ 주소: (우)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청 1층 사회복지화국 생명위원회

**4. 문의 : 교구 사회복지화국 ☎ 031-268-8523 (내선 0401) / brave@casuwon.or.kr**